

지정 지역 이외에서 일본으로 개·고양이를 수입하기 위한 지침서

(최종 갱신 2025년 2월)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지정 지역 이외란?]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광견병 청정국·지역인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하와이, 괌 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
을 말합니다.

※광견병 발생 상황이나 검역제도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지침서에는 개·고양이를 지정 지역 이외에서
수입하기 위한 조건과 필요한 수속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개·고양이를 수입하실 분은 본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동물검역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목 차

A	들어가며	3
	수입자의 책무	3
	본 지침서의 대상	3
B	수입 검역 수속	4
	수입 검역 수속의 절차	4
	절차 1 마이크로칩 이식(개체 식별)	5
	절차 2 광견병 예방주사(2 회 이상)	6
	절차 3 광견병 항체검사(혈청검사)	7
	절차 4 수출 전 대기(180 일간 이상)	8
	절차 5 사전 신고	9
	1. 신고서 제출	9
	2. 신고 접수서	10
	3. 변경 신고서	10
	절차 6 출국 전의 임상검사(수출 전 검사)	11
	절차 7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취득	12
	1.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12
	2. 증명서 사전 확인	13
	절차 8 일본 도착 후의 수입검사	14
	1. 도착 시 검사	14
	2. 계류시설에서의 계류검사	16
	[참고 1]마이크로칩 이식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경우(조건부 수입)	18
	[참고 2]수송에 관한 유의점	20
	1. 수입이 가능한 공항·항구	20
	2.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유의점	20
	3. 수송 케이지에 관한 유의점	21
	4. 수송 형태	21
	[참고 3]권장 조치(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22
	1. 예방주사(혼합백신) 접종	22
	2. 외부·내부 기생충 구제	22
C	주요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일람(문의처)	23
D	일본 수입 후의 관리	24

A 들어가며

일본에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광견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개만 해당)에 근거하는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고 일본에 도착한 개·고양이의 계류기간(수입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12시간 이내입니다(수입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 시간 만에 끝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개·고양이는 동물검역소 계류시설에서 계류검사(최장 180일)를 받게 됩니다. 또한 검사의 결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자의 책무

‘수입자(개·고양이 소유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다음의 각 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들 내용을 양해하신 후에 개·고양이를 수입해 주십시오.

- ◆ 수출국(출발하는 나라)에서 실시하는 검사·조치
- ◆ 사전 신고
- ◆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취득
- ◆ 수송 수속
- ◆ 일본 도착 후의 수입검사 신청
- ◆ 계류시설에서 계류검사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제반 비용
- ◆ 수입할 수 없는 경우의 반송처분
- ◆ 기타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본 지침서의 대상

지정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아래 동물종과 이들의 1대 잡종^{*1}이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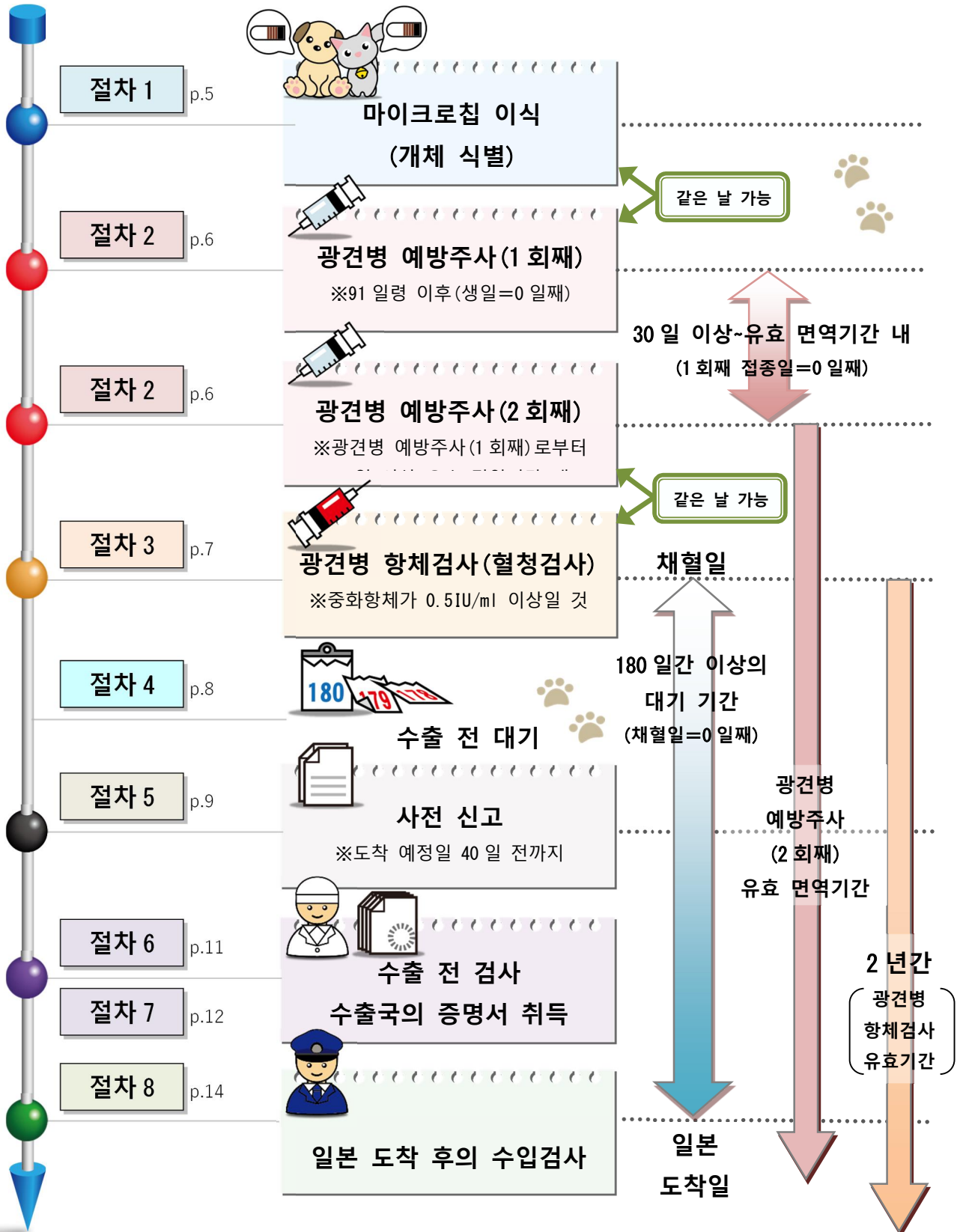
동물종	과	속	종	학명 ^{*2}
개	개과	개속	개	<i>Canis familiaris</i>
고양이	고양이과	고양이속	고양이	<i>Felis catus</i>

^{*1} 1대 잡종...그 종과 다른 종이 교잡된 1대째의 교잡종
예: 늑대개(개색늑대×늑대), 사바나캣(집고양이×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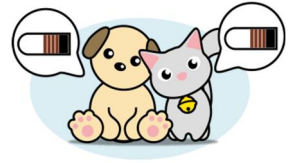
^{*2} 출전: “세계 포유류 일본명 사전”(헤이본사, 1998년)

B 수입 검역 수속

수입 검역 수속의 절차



절차 1 마이크로칩 이식(개체 식별)



개·고양이의 피하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합니다.

실시 시기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입니까? :

동물의 개체 확인을 위해 개별 등록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조그만 전자 칩으로 동물의 피하에 이식합니다.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 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 절차 2]를 접종하기 전(같은 날 가능)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주십시오.

권장해 드리는 마이크로칩 규격

ISO 규격의 마이크로칩(번호가 15 자리수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ISO 11784 및 11785, ISO: 국제표준화기구)

주의 사항

-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에서 이식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에서 검사·조치할 때마다 마이크로칩 번호가 판독기(리더)로 확실히 판독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일본 도착 후의 수입검사[→ 절차 8]에서 마이크로칩 번호를 읽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마이크로칩 번호를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절차 7]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고양이는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180 일간의 계류검사[→ 절차 8의 2.]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 ISO 규격 이외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 또는 마이크로칩 이외의 방법으로 개체 식별을 하고 있는 경우는 도착 예정의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p.23]에 상담해 주십시오.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기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주사[→ 절차 2]는 무효이지만 조건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1]

절차 2 광견병 예방주사(2 회 이상)



마이크로칩 이식 후 광견병 예방주사를 2 회 이상 접종합니다.

실시 시기

- 1 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
 - ☐ 생후 91 일 이상(태어난 날을 0 일째로 합니다)에 접종이 완료되어 있을 것
 - ☐ 마이크로칩 이식[→ 절차 1] 후(같은 날 가능)에 접종이 완료되어 있을 것
- 2 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
 - ☐ 1 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로부터 30 일 이상(접종일을 0 일째로 합니다) 간격을 두고, 1 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 유효 면역기간 내에 접종이 완료되어 있을 것

※유효 면역기간이란

예방액(제품)의 사용 기한이 아니라 개·고양이의 체내에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제품마다 다르므로 접종한 수의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유효한 예방액의 종류

- 불활화 백신(inactivated / killed virus vaccine)
- 재조합 백신(recombinant vaccine)
 - ※둘 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합니다.

※생백신(live virus vaccine)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일본 도착일 이전에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 면역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반드시 유효 면역기간 내에 추가 접종을 해 주십시오.
- 유효 면역기간이 지난 후에 접종한 것은 '추가 접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1 회째 광견병 예방주사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기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주사는 무효이지만 조건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1]

절차 3 광견병 항체검사(혈청검사)



지정 검사시설로 혈액(혈청)을 보내어 광견병에 대한 항체가를 측정합니다.

실시 시기

2회째의 광견병 예방주사[→ 절차2] 후(같은 날 가능), 동물병원에서 채혈하여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검사시설(지정 검사시설)에서 광견병 항체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채혈은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 면역기간 내에 실시해 주십시오.

지정 검사시설

광견병 항체검사는 지정 검사시설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 검사시설 일람 <http://www.maff.go.jp/aqs/animal/dog/lab.html>

※검사 방법: FAVN(형광 항체 바이러스 중화시험) 또는 RFFIT(신속 형광 포커스 억제시험)

※개의 혈액(혈청)은 일본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들고 나갈 때 동물검역소에서 수출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검역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maff.go.jp/aqs/animal/dog/test.html>

검사 결과

광견병에 대한 항체가(면역 항체의 양)가 0.5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광견병 항체검사의 유효 기간

채혈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단, 1 회째 광견병 예방주사로부터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 면역기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개·고양이는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 기간 내에 일본에 도착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시 광견병 항체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절차 4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 기간 내에 일본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주의 사항

- 지정 검사시설이 발행한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 통지서는 일본 도착 시에 제시해 주십시오.
- 면역 항체의 생성량이나 상승 정도에는 개체 차이가 있습니다. 항체가가 0.5IU/ml 이상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 광견병 항체검사 수속에 대해서는 각 지정 검사시설에 문의해 주십시오.

절차 4 수출 전 대기(180일간 이상)



광견병 항체검사 채혈일을 0 일째로 하여 180 일간 이상 대기합니다.

개·고양이는 채혈일로부터 180 일간 이상 대기한 후 ‘광견병 예방주사 유효 면역기간’ 및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 기간’ 내에 일본에 도착해야 합니다.

대기 일수가 부족할 경우

채혈일로부터 180 일간 이상 대기하지 않고 일본에 도착한 개·고양이는 부족한 일수 동안 동물검역소 계류시설에서 계류검사[→ 절차 8 의 2.]를 받게 됩니다.

일본 도착일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 유효 면역기간이 끝나 버리는 경우

반드시 유효 면역기간 내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추가로 접종해 주십시오.

유효 면역기간 내에 추가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절차 2 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광견병 항체검사 유효 기간 내에 일본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2 회째 광견병 항체검사(항체검사②)를 실시하고, 항체검사②의 유효 기간(채혈일로부터 2 년간) 내에 일본에 도착해 주십시오.

아래의 3 개 항목 전부를 충족시키면 항체검사② 후에 다시 수출 전 대기(180 일간 이상)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1 회째 광견병 예방주사로부터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 면역기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2. 항체검사②의 채혈일은 1 회째 광견병 항체검사(항체검사①)의 채혈일을 0 일째로 하여 180 일간 이상 경과한 날일 것
3. 모든 광견병 항체검사의 항체가가 0.5IU/ml 이상일 것

절차 5 사전 신고



개·고양이가 일본에 도착하는 날의 40 일 전까지 도착 예정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사전 신고를 합니다.

1. 신고서 제출

개·고양이가 일본에 도착하는 날의 **40 일 전**까지 도착 예정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p.23]에 '신고서'를 전자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고서'는 동물검역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aff.go.jp/ags/animal/dog/import-other.html>

◆ 개: '광견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개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

◆ 고양이: '광견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의 수입에 관한 신고서'

수입 신고는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검역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www.maff.go.jp/ags/tetuzuki/system/49.html>

※ '신고서'의 용어 해설

- 생년월일(연령)[Date of birth (Age)]: 생년월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일본 도착 시의 만 연령을 기입
- 수입 장소[Scheduled place of arrival]: 도착 예정인 공항·항구 이름
- 보내는 사람[Consignor]: 해외에서 개·고양이를 보내는 사람(휴대 수송인 경우는 개·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
- 받는 사람[Consignee]: 일본 도착 시 개·고양이를 받는 사람
- 표식 연월일[Date of identification]: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날
- 수송 형태[Cargo or hand luggage]: 휴대 또는 화물[→ 참고2의 4.]
- 목적지[Name and address of destination]: 일본으로 수입한 후에 개·고양이를 사육할 장소
- 광견병 예방접종[Rabies vaccination]: 접종한 광견병 예방주사의 정보
- 유효기한[Date of expiry]: 예방액(제품)의 사용기한이 아니라 개·고양이의 체내에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유효 면역기간)
- 예방액의 종류[Kind of vaccine]: 광견병 예방접종 → 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형 백신
기타 예방접종 → 대상 질병의 명칭(디스템퍼,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염 등)
- 채혈일[Date of blood sampling]: 광견병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 연월일(검사일은 아닙니다)

주의 사항

- 개는 수입할 수 있는 공항·항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2 의 1.]
- '신고서'에 연락처를 명기해 주십시오.
- 수출 전 대기[→ 절차 4] 도중에도 '신고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일본에 도착하는 날의 40 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신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일본에 도착하는 날의 40 일 전까지 도착 공항·항구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예정된 내용으로 기입한 '신고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항·항구의 동물검역소에 제출하고, 확정된 후에 '변경 신고서'[→ 절차 5 의 3.]를 제출해 주십시오.

2. 신고 접수서

‘신고서’를 받은 동물검역소는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신고 접수서’를 발급합니다.
‘신고 접수서’는 수출국에서의 수속이나 항공사 등의 탑재 수속 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쇄물 또는 전자 파일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 상황에 따라 수입 시기·장소의 변경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 접수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계류 기간은 일본 도착 후 수입검사 결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신고서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에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는 ‘변경 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동물검역소에 전자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 내용이 수입검사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물검역소에서 ‘신고 접수서’가 다시 발급됩니다.

- ‘변경 신고서’는 동물검역소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www.maff.go.jp/aqs/animal/dog/pdf/modnotification.pdf>
- ‘변경 신고서’는 신고한 도착 예정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NACCS 를 이용해 신고를 한 경우는 변경 신고도 NACCS 에서 실시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한 동물검역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 아래와 같은 변경은 수입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도착일을 앞당기는 것
 - ◆ 수입하는 동물 마릿수를 추가하는 것
 - ◆ 다른 개체로 변경하는 것
 - ◆ 도착 예정일이 지난 후 수입 일정을 변경하는 것

절차 6 출국 전의 임상검사(수출 전 검사)



출국 전에 수의사에게서 임상검사(수출 전 검사)를 받습니다.

실시 시기

출국 직전(탑재 전 10일 이내)에 민간 수의사 또는 정부기관의 수의관에게서 임상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수출 전 검사의 기일에 대하여

수출 전 검사는 일본 도착 전의 개·고양이 건강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출발 직전이 바람직합니다. 수출국의 상황에 따라 탑재 전 10일 이내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도착 예정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p.23]에 상담해 주십시오.

임상검사의 내용

- 개의 경우
 - ◆ 광견병 및 렘토스피라증에 걸려 있지 않을 것 또는 걸려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 고양이의 경우
 - ◆ 광견병에 걸려 있지 않을 것 또는 걸려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절차 7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취득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수출국 정부기관이란

수출국에서 동물검역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기관(일본의 동물검역소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1.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개·고양이의 생년월일 또는 연령

(2) 마이크로칩에 대하여 [→ 절차 1]

☐ 마이크로칩 번호

☐ 이식 연월일

(3)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하여 [→ 절차 2]

(접수된 '신고서'에 기재한 모든 광견병 예방주사 정보)

☐ 접종 연월일

☐ 유효 면역기간

☐ 예방액(백신)의 종류(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형 백신)

☐ 예방액(백신)의 제품명, 제조회사명

(4) 광견병 항체검사에 대하여 [→ 절차 3]

(접수된 '신고서'에 기재한 모든 광견병 항체검사 정보)

☐ 채혈 연월일

☐ 지정 검사시설명

☐ 항체가

※지정 검사시설이 발행한 '검사결과 통지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5) 수출 전 검사에 대하여 [→ 절차 6]

☐ 검사 연월일

☐ '광견병' 및 '렙토스피라증(개만 해당)'에 걸려 있지 않은 것 또는 걸려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것

(6) 광견병 이외의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에 대하여 [→ 참고 3]

(실시하고 있을 경우만 기재)

☐ 대상 질병명 또는 기생충명

☐ 접종 연월일 또는 조치(투약) 연월일

☐ 예방액(백신)의 종류(예방주사의 경우)

☐ 유효 면역기간(예방주사의 경우)

증명서 권장 양식(Form AC)

일본의 수입 조건을 빠지지 않고 기입할 수 있는 증명서 권장 양식(Form AC)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 권장 양식은 동물검역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aff.go.jp/aqs/english/animal/dog/attach/pdf/import-other-5.pdf>
- 민간 수의사가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의 배서 증명(endorsement)을 취득합니다.
- 수출국에 따라서는 민간 수의사 대신에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의관이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요 사항이 완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 Form AC에 전부 기재될 수 없는 정보에 관해서는 권장 양식인 “Attach”를 마찬가지로 작성하고, Form AC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서 증명(endorsement)이란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한 증명서 승인을 말합니다. 배서 증명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 수의관의 서명(친필), 공적 인감, 소속기관명, 증명일이 필요합니다. 배서 증명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의 사항

- 증명서 작성 시 연필 또는 지울 수 있는 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오기 정정 시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정한 곳에 이중선을 긋고 올바른 내용을 기재한 후 정정자의 사인과 수정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 배서 증명 취득 후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한 정정 이외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오기 정정은 배서 증명 취득 전에 실시해 주십시오.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해 정정된 경우는 다시 정정한 부분에 배서 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

2. 증명서 사전 확인

증명서의 미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증명서 내용 확인을 동물검역소에 의뢰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필요 사항을 기입한 증명서(또는 초안)를 전자메일로 신고를 접수한 동물검역소에 송신해 주십시오.
- 배서 증명 취득 후의 증명서는 정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초안 단계에서 내용 확인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 수출국 정부기관의 배서 증명을 취득할 때의 수속과 필요한 기간, 발행 장소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 취득한 증명서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최장 180 일간의 계류검사[→ 절차 8 의 2.]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절차 8 일본 도착 후의 수입검사



개·고양이는 일본 도착 후 지체없이 도착 공항·항구의 동물검역소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착 시 검사의 결과 일본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최장 180 일간의 계류 검사 또는 반송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입검사

수입검사에는 ‘1. 도착 시 검사’와 ‘2. 계류시설에서의 계류검사’가 있습니다.
도착 후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을 해 주십시오.

1. 도착 시 검사

도착 시 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검역 증명서가 발급되고 수입이 인정됩니다.

검사 신청 장소

- ◆ 휴대(수탁 수하물) 수송[→ 참고 2 의 4.]의 경우
세관의 검사를 받기 전에 개·고양이를 데리고 수하물 수취장 내의 동물검역소 카운터로 와 주십시오.
- ◆ 화물 수송[→ 참고 2 의 4.]의 경우
화물 지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동물검역소 사무소로 와 주십시오.

신청자

검사 신청 수속은 ‘수입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실시해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 ☐ 수입검사 신청서
- ☐ 위임장(대리인이 수속을 취할 경우
※통관대리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불필요)
- ☐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 통지서[→ 절차 3]
-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절차 7]
- ☐ (화물 수송의 경우) 항공운송장(항공화물의 경우): AWB(Air Way Bill)의 사본
선하증권(선박화물의 경우): B/L(Bill of Lading)의 사본
- ☐ 기타 동물검역소가 지시하는 서류

수입검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 개·고양이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대상 질병: ‘광견병’, ‘렙토스피라증(개만 해당)’)
- ◆ 개체 식별 번호가 각 증명서와 일치할 것(마이크로칩 번호를 읽어들이십시오)
- ◆ 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것일 것,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배서 증명이 있을 것
-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일본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것

검사에 걸리는 시간

증명서 내용과 개·고양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고, 일본의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검사를 위한 계류기간은 12 시간 이내입니다(통상적으로 수 시간 안에 끝납니다).

비행기나 배를 갈아타는 등의 예정이 있는 분은 미리 동물검역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광견병 항체가 모니터링 검사(개만 해당)

수입검역제도의 검증을 위해 지정 지역 이외에서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중부 국제공항 및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개 중에서 추출해 광견병 항체가 보유 상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도착 시 광견병 항체가 모니터링 조사(채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착 시 검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도착 시 검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계류시설에서의 계류검사[→ 절차 8의 2.]를 받게 됩니다. 또한 검사의 결과 수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류시설에서의 계류검사를 받지 않고 반송처분을 희망할 경우, 이는 동물검역소의 지시하에서 실시되지만, 수속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반송할 경우는 반송처의 수입 조건에 대해 상대국의 검역 당국이나 주일 대사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 계류시설에서의 계류검사

수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최장 180일간 계류검사를 실시합니다. 계류기간이 만료되고 개·고양이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는 수입검역 증명서가 발급되고 수입이 인정됩니다.

계류검사 장소

계류검사는 도착 공항·항구에 있는 동물검역소 계류시설에서 실시합니다.

[계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물검역소]

- ◆ 공항: 홋카이도 출장소(이부리 분실), 나리타 지소, 하네다공항 지소, 중부공항 지소, 간사이공항 지소, 후쿠오카공항 출장소, 가고시마공항 출장소
- ◆ 항구: 요코하마 본소, 고베 지소, 오사카 출장소, 모지 지소, 오키나와 지소

계류검사 내용

계류검사는 주로 임상 관찰을 통해 ‘광견병’ 및 ‘렙토스피라증(개만 해당)’의 징후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계류검사에 드는 비용

동물검역소가 실시하는 검사 이외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도착 공항·항구에서 계류시설까지의 수송비
(수입자에 의한 수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류검사 중의 사육 관리비(먹이, 사용하는 방의 청소·소독 등에 드는 비용)
- 계류시설의 광열수도비
- 수의사 왕진비(의뢰한 경우)
- 계류 중에 반송처분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계류시설의 수리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필요 경비

계류검사 중의 사육 관리에 대하여

계류검사 중의 사육 관리는 수입자의 책임으로 실시합니다.

- 관리업자가 상주하고 있는 계류시설에서는 사육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관리업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계류시설의 사육 관리에 대해서는 계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물검역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관리업자에게 사육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계류시설]

나리타 지소, 하네다공항 지소, 간사이공항 지소

계류검사 중의 면회

계류검사 중 개·고양이 면회는 가능하지만, 면회 시간이나 면회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물검역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계류검사의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개·고양이에게 ‘광견병’ 또는 ‘렙토스피라증(개만 해당)’의 징후가 인정될 경우, 계류기간의 연장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계류검사 중에는 수출국에 반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계류시설에서 개·고양이를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 동물검역소에서는 치료 행위를 하지 않지만, 민간 수의사의 진료(왕진에 한함)는 가능합니다. 계류검사 중에 동물의 몸이 아플 경우에 대비해 미리 왕진이 가능한 수의사를 확보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계류검사 중의 개·고양이 건강 관리 및 계류시설 위생 관리의 관점에서 예방주사(혼합백신) 접종 및 기생충 구제[→ 참고 3]를 사전에 수출국에서 실시해 주십시오.

[참고 1] 마이크로칩 이식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한 경우
(조건부 수입)

다음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마이크로칩 이식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주사를 유효로 인정합니다.

조건부 수입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동물검역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대상이 되는 개·고양이

- ☐ 마이크로칩 이식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광견병 예방주사①)를 접종했다.
- ☐ 광견병 예방주사①을 생후 91 일령 이후(생일을 0 일째로 함)에 접종했다.
- ☐ 광견병 예방주사①로부터 30 일 이상(접종일을 0 일째로 함)이 경과했고,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①의 유효 면역기간 내에 있다. ※유효 면역기간[→ 절차 2]

수입 조건

◆ 다음과 같은 2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① = 1 회째, ② = 2 회째

● 광견병 항체검사 2 회형

광견병 예방주사① → 마이크로칩 이식^{*1} → 광견병 항체검사의 채혈①^{*1}

→ 광견병 예방주사②^{*2} → 광견병 항체검사의 채혈②^{*2}

(^{*1}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항체검사의 채혈①은 같은 날 가능)

(^{*2} 광견병 예방주사②와 광견병 항체검사의 채혈②는 같은 날 가능)

● 광견병 항체검사 1 회형

광견병 예방주사① → 마이크로칩 이식^{*3} →

‘광견병 항체검사의 채혈 + 광견병 예방주사② (※반드시 같은 날에 실시)’

^{*3}

(^{*3}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항체검사의 채혈 + 광견병 예방주사②’는 같은 날 가능)

◆ 광견병 항체검사 2 회형과 1 회형 모두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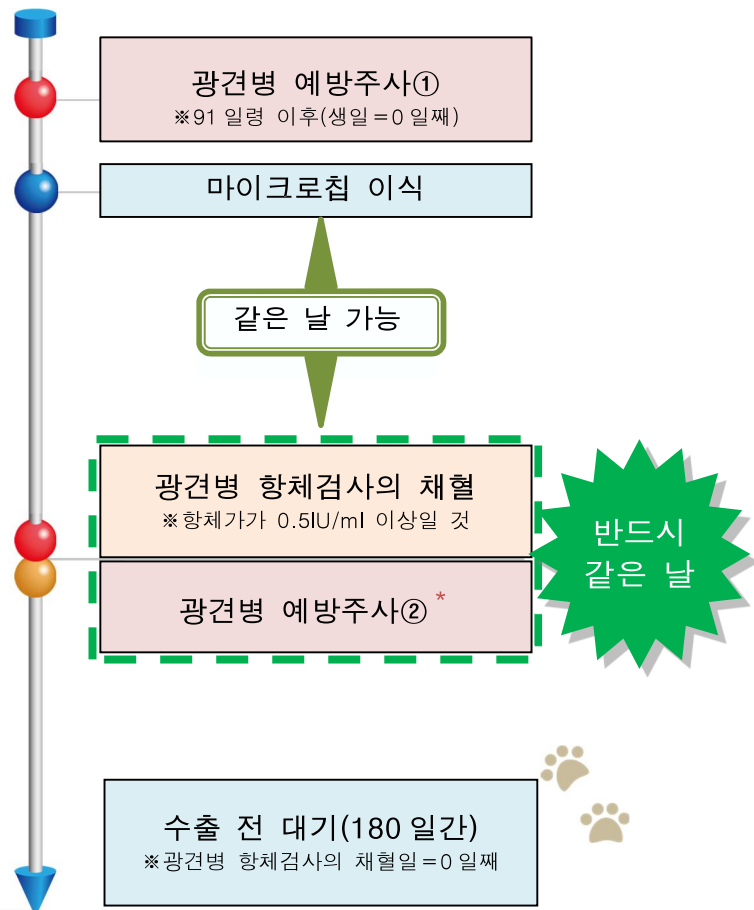
- ☐ 광견병 예방주사의 예방액 종류는 불활화 백신 또는 재조합형 백신일 것[→ 절차 2]
- ☐ 광견병 예방주사①로부터 일본 도착할 때까지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 면역기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접종되어 있을 것
- ☐ 채혈한 혈액(혈청)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의 지정 검사시설에서 광견병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가 0.5IU/ml 이상일 것[→ 절차 3]
- ☐ 수출 전 대기[→ 절차 4] 후 ‘광견병 예방주사의 유효 면역기간’ 및 ‘광견병 항체검사의 유효 기간(채혈일로부터 2 년간)’ 내에 일본에 도착할 것
- ☐ 모든 조치와 수출 전 검사[→ 절차 6]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절차 7]

[참고 1]의 대상이 되는 개·고양이에 적용되는 수입 조건 순서도

● 광견병 항체검사 2 회형



● 광견병 항체검사 1 회형



* 광견병 예방주사①에서 30 일 이상(접종일=0 일째) 간격을 두고, 또한 광견병 예방주사①의 유효 면역기간 내에 접종

[참고 2] 수송에 관한 유의점

아래 항목에 유의하여 개·고양이를 수송해 주십시오.

1. 수입이 가능한 공항·항구

개는 아래의 공항·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지만 아래의 공항·항구 이외의 장소에 도착할 예정인 경우는 사전에 동물검역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 공항: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중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오사카(이타미)공항, 고베 공항, 기타큐슈공항, 후쿠오카공항, 가고시마공항, 나하공항
- ◆ 항구: 도마코마이항, 게이힌항, 나고야항, 한신항, 간몬항, 하카타항, 가고시마항, 나하항

주의 사항

-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계류검사[→ 절차 8의 2.]를 받을 개·고양이는 계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항·항구에 도착하도록 해 주십시오.

2.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유의점

아래와 같은 개·고양이는 수송 및 계류검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입할 경우는 수송과 계류검사에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상황을 잘 아는 민간 수의사와 상담한 후 수입자의 책임 하에서 수입해 주십시오.

- ◆ 너무 어리거나 노령인 경우
- ◆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 ◆ 병력이 있거나, 병약한 경우 및 투약 치료 중인 경우(기생충 구제약은 제외)
- ◆ 부상을 당해 있는 경우

3. 수송 케이지에 관한 유의점

수송 케이지는 개·고양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도망을 막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또한 탑재 가능한 수송 케이지의 크기와 종류 등에 대해서는 이용하실 항공사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4. 수송 형태

수송 형태에는 ‘휴대(수탁 수하물) 수송’과 ‘화물 수송’의 2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실 항공사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 휴대(수탁 수하물) 수송

객실 반입 또는 화물실에 탑재해 수송합니다.

화물실에 탑재한 경우는 수하물 수취장 등에서 인도받습니다.

◆ 화물 수송

항공(또는 선박) 화물로 수송됩니다.

항공 화물인 경우는 ‘항공운송장(AWB: Air Way Bill)’, 선박 화물인 경우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발행됩니다.

일본 도착 후 개·고양이는 화물 지구의 화물장치장(보세장치장)으로 운반됩니다.

동물검역 수속 후 세관 수속을 실시합니다.

주의 사항

- 항공사 등에 따라서는 수송 가능한 동물종이나 품종, 취급 가능한 시기 등 여러 규정을 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용하실 항공사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 3] 권장 조치(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건강 관리상 아래의 조치를 권장합니다.

특히 일본 도착 후 계류시설에서 계류검사[→ 절차 8 의 2.]를 받을 개·고양이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 및 계류시설 위생 관리의 관점에서 예방주사(혼합백신) 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1. 예방주사(혼합백신) 접종

- ◆ 개: 디스템퍼, 개 아데노바이러스(2 형) 감염증,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등
- ◆ 고양이: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등

주의 사항

- 매우 어린 개·고양이에게 예방주사를 접종할 경우는 상황을 잘 아는 민간 수의사의 지도 하에서 충분한 면역항체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와 횟수에 유의하면서 실시해 주십시오.

2. 외부·내부 기생충 구제

- ◆ 외부 기생충: 벼룩류·진드기류
- ◆ 내부 기생충: 선충류·촌충류

주의 사항

- 일본 도착 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실시해 주십시오.

C 주요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일람(문의처)

검역소 이름	수입 공항·항구	전화	전자메일
홋카이도·도호쿠 지소	도마코마이항, 신치토세공항	0123-24-6080	aq.s.spk@maff.go.jp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 (수입신고서 접수, 수출) 개·고양이 수출입 수속 창구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03-5708-7261	도착 예정 공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나리타지소 여구검역 제 1 과(제 1 터미널빌딩 내)	나리타 국제공항	0476-32-6510	aq.s.nrtr1@maff.go.jp
나리타지소 여구검역 제 2 과(제 2 터미널빌딩 내)	나리타 국제공항	0476-34-2342	aq.s.nrtr2@maff.go.jp
나리타지소 화물검사과	나리타 국제공항	0476-32-6655	aq.s.nrtcargo@maff.go.jp
하네다공항 지소 (제 3 터미널)	도쿄 국제공항	03-5757-9752	aq.s.hnd@maff.go.jp
요코하마본소(동물검역과)	게이힌항	045-751-5973	aq.s.yokdobutu@maff.go.jp
중부공항 지소	중부 국제공항	0569-38-8577	aq.s.nga@maff.go.jp
나고야 출장소	나고야항	052-651-0334	aq.s.ngo@maff.go.jp
간사이공항 지소 (화물검사장)	간사이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072-455-1956 072-455-1958	aq.s.kixk1@maff.go.jp aq.s.kixcargo@maff.go.jp
고베 지소	한신항(효고) 고베 공항	078-222-8990	aq.s.ukb@maff.go.jp
오사카 출장소	한신항(오사카) 오사카(이타미)공항	06-6575-3466	aq.s.osa@maff.go.jp
모지 지소	간몬항, 기타큐슈공항	093-321-1116	aq.s.moj@maff.go.jp
하카타 출장소	하카타항	092-262-5285	aq.s.hkt@maff.go.jp
후쿠오카공항 출장소	후쿠오카공항	092-477-0080	aq.s.fuk@maff.go.jp
가고시마공항 출장소	가고시마공항, 가고시마항	0995-43-9061	aq.s.kop@maff.go.jp
오кина와 지소	나하항	098-861-4370	aq.s.nah@maff.go.jp
나하공항 출장소	나하공항	098-857-4468	aq.s.nap@maff.go.jp

D 일본 수입 후의 관리

수입 후에는 일본 국내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1. 시정촌에 등록(개만 해당)

개는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사육 장소의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 후 30 일 이내에 동물검역소가 발급한 ‘개 수입검역 증명서’를 지참해 사육 장소의 지자체 창구에서 등록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2. 광견병 예방주사(개만 해당)

개는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매년 1 회의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3. 마이크로칩 등록(임의)

동물검역소가 발급한 ‘수입검역 증명서’의 사본으로 일본 국내의 마이크로칩 번호(현재는 ISO 규격만 가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번호를 등록하면 실종된 개·고양이가 일본 국내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AIPO(동물 ID 보급추진회의)에 문의해 주십시오.

◆ AIPO(동물 ID 보급추진회의) 사무국: 공익사단법인 일본수의사회
전화: 03-3475-1695 FAX: 03-3475-1697

주의 사항

- 수입검역 증명서는 수입한 개·고양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할 때 사용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되도록 빨리 동물검역소에 연락해 주십시오.